

©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 1566-2844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장원현(6570)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/ 대리 고영옥(6573)/ E-mail: kyo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575호

시행일자 2013. 5. 23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74호(2013.5.22)
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.

- 붙임: 1. 고시전문
2. 변경대비표
3. 개정안. 끝.

수신처: 각 시도지사회장, 학회장,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의원협회장

대한의사협회장

“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”

